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세계잉여금 등 처리 관련 규정에서 인용하는 「지방교부세법」의
항 번호를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(안 제90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
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